

수신: 유준상(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

발신: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제목: 회장 연임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출 및 취임에 있어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한 이전 경력이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위 질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질의의 요지

질의자 유준상은 2009년부터 대한롤러경기연맹 제14대, 제15대 회장을 연임하고, 2016년 8월 28일 그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협회 산하 어떤 종목단체의 임원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유준상은 2018. 5. 17.에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바, 과거 대한롤러경기연맹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 소정의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의견

가.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임기) 제1항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회수 산정 시 다른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된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임"은 어느 한 종목단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현재 재직

공정인가
법무법인(유) 한별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7층 (역삼동, 삼원타워)
대표전화 : (02)6255-7777 FAX : (02)6255-7996 www.hanbl.co.kr

하고 있는 자가 연속하여 임원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질의인 유준상의 경우처럼 대한롤러경기연맹의 회장직을 그만두고 무려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대한요트협회 회장에 출마/취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종목단체의 임직원을 그만 둔 후 2년이 아니라 단 한 달이라도 경과한 후라면 새로 대한요트협회 회장직 출마 및 취임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더구나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이 2017. 6. 26.자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정관 제 25조 제1항이 "1회만 **중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위 2017. 6. 26.자 개정에 의하여 정관 제25조 제1항이 "1회만 **연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이 "중임"에서 "연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질의자 유준상의 경우처럼 타 경기단체의 회장직을 그만둔 후 2년을 쉬다가 대한요트협회 회장 직에 취임하는 것은 "중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적어도 "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한요트협회 정관의 개정 취지를 고려 하더라도, 질의자 유준상이 대한요트협회의 회장직에 출마 및 취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위와 같이 답변드리고,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본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 02-6255-7777 팩스: 02-6255-7996]

2018. 5. 21.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 종 관



공 중 인 가 한 별
법무법인(유)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7층 (역삼동, 삼원타워)
대표전화 : (02)6255-7777 FAX : (02)6255-7996 www.hanbl.co.kr